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3월 3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3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3. 30.(화)	담당부서	지역경제진흥과
담당과장	박덕열 과장(044-203-4420)	담 당 자	안준호 사무관(044-203-4422)
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
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허용,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-

- 4월부터 연장 신청을 접수 받아 연장 평가절차를 진행할 예정 -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'시행령') 일부개정령안이 3월 30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6일(화)부터 시행한다.

□ 개정 시행령은 지역산업위기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,

○ 기존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하고,

○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	현 행		개 정(안)
최초 지정	최대 2년	⇨	최대 2년
1회 연장	최대 2년		최대 2년
2회이상 연장	불가		허용 (총 지정기간 내 잔여기간限)
총 지정기간	최대 4년(1~4년)		최대 5년(1~5년)

□ 그간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**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**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**를 운영해 왔으며,

○ 현재 **군산**('18.4.5~'22.4.4), **목포·영암·해남, 통영·고성, 거제, 창원 진해구, 울산 동구**(이상, '18.5.29~'21.5.28) 등 6개 지역을 지정하였고, 해당지역은 **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**한 바 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4월 내**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**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,**

○ 산업·지역 전문가(현장실사단)의 **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** 등을 통해 **산업·경제 여건을 면밀하게 평가**하고, **관계부처 협의**를 거쳐 **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**으로 지정기간을 **연장할 계획**이며,

○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**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**하기 위하여 **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구체화 할 계획**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"이번 **시행령 개정**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하였던 제도를 **지역의 산업·경제 상황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**하였으며,

○ 앞으로, **선제적 위기대응**,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**연착륙 지원** 등 **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**도 **검토중**이다.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안준호 사무관(☎ 044-203-44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